

의안번호	제2021 - 14호
의결 연월일	2021. 12. 3. ( 제 9 회 )

의결사항

##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변경-
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

제출자	위원장 권덕철 (보건복지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12. 3.



## 1. 의결주문

-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재원확보를 위해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## 2. 제안이유

-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, 올해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 지급액 대비 既편성된 '21년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소요액 70.1억원 확보 필요

## 3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70.1억원을 공단관리운영 인건비에서 증액하고, 여유자금운용(국민연금기금)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재정법 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, 국민연금법 제103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,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

다. 관계부처협의 : 기획재정부(기금운용계획과) 협의

## 5.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별도 의견없이 원안 심의



< 별 지 >

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 
-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변경-

2021. 12.





# 1.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

## □ 변경사유

- '20년도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해 부족한 예산 확보
  - '20년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.7%\*, 성과급 총액은 226.8억원
    - \* '21년 7차 기금운용위원회('21.7.2.) 의결 / 목표 70.7% + 조직 16.0%
  - 성과급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121.3억원을 '21.7월 지급 완료 하였으나, 부족한 105.5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
  - 부족액 105.5억원 중 35.4억원은 인건비 불용예상액으로 충당하고, 70.1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확보 필요

## □ 변경내역

- (증액) 국민연금기금운영비 내 '공단관리운영 인건비' 70.1억원
- (감액) 여유자금운용 내 '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' △70.1억원

### ※ 최근 3년간 운용수익률 및 성과급 지급 현황

(단위 : %, 백만원)

구분	'19년 ( '18년 귀속)	'20년 ( '19년 귀속)	'21년 ( '20년 귀속)
운용수익률	-0.89%	11.34%	9.58%
성과급편성액	11,301	11,301	12,131
성과급지급액 (지급률)	9,609 (45.4%)	16,654 (73.7%)	22,684 (86.7%)

## 2.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1년 계획액 (A)	2021년 변경		비고
		요구 (B)	증감 (B-A)	
합 계	133,768,799	133,768,799	-	
[7300]국민연금기금운영비	541,058	548,073	+7,015	
[7376] 기금운영비	834	834	-	
[7378]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	540,224	547,239	+7,015	
[605] 공단관리운영 인건비	407,769	414,784	+7,015	
[110] 인건비	407,769	414,784	+7,015	
[01] 보수	407,769	414,784	+7,015	
[607]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	105,742	105,742	-	
[614]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	26,713	26,713	-	
[7400]국민연금운영(여유자금운영위탁등)	299,679	299,679	-	
[7431]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	25,492	25,492	-	
[7432]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	112,246	112,246	-	
[7433]국민연금 복지사업	74,232	74,232	-	
[7478]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	87,709	87,709	-	
[7600]국민연금운영(급여지급)	29,172,591	29,172,591	-	
[7631]국민연금급여지급	29,172,591	29,172,591	-	
[9700]여유자금운용	103,755,471	103,748,456	△7,015	
[9720]여유자금운용(국민연금기금)	103,755,471	103,748,456	△7,015	
[972]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	2,591,129	2,584,114	△7,015	
[470]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	2,591,129	2,584,114	△7,015	
[02]통화금융기관예치금	2,591,129	2,584,114	△7,015	
[974]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	15,529,210	15,529,210	-	
[976]국민연금기금 국외채권매입	37,038,066	37,038,066	-	
[977]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	20,373,171	20,373,171	-	
[978]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	28,223,895	28,223,895	-	

**□ 국가재정법 제70조 [기금운용계획의 변경]**

**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기금관리주체(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)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·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20. 6. 9.>

1.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

**□ 국가재정법 제74조 [기금운용심의회]**

**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**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20. 6. 9.>

1.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
2.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

⑤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,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**□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[기금운용계획 변경]****IV. 기금운용계획 변경**

□ 기재부 협의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사항(주요항목의 20% 이내 변경)

- ① 기금운영비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